

## 할부금융 약관

여신금융협회 사후보고 접수일자 : 2018.05.04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재(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간의 할부금융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할부금융"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채무자와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 받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합니다.
2. "할부금융자금"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을 의미합니다.
3. "할부금"이라 함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 및 이자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 제3조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

할부금융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1. 매도인, 채무자 및 금융회사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물건의 세부내용 및 인도 등의 시기
3. 이자율, 연체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
4. 물건가격, 할부금융자금
5. 월 할부금의 금액, 지급횟수 및 시기
6.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 등의 실제연간요율

### 제4조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
2. 할부금의 변제방법

### 제5조 (할부금융의 신청 및 지급위탁계약)

채무자가 본 할부금융 약정서 앞면에 기재된 자동차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 제6조 (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할부금의 원제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제7조 (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

- ① 채무자는 할부금융 대출일로부터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고객이 스스로 초회납입일을 선택하기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 ② 채무자가 월 할부금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약정이자율 +3%, 법정 최고금리 (24%) 이내)로 산정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할부금융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할부금융자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 제8조 (기한이익의 상실)

-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자동차의 양도, 대여 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당해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채무자는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하면 당해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제9조 (할부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 ① 채무자는 할부금융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 할부금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 할부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 제10조 (항변권)

-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매도인과의 자동차 할부매매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매도인이 자동차를 약정한 인도시기까지 채무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지급거절을 항변함에 있어서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를 통지하기로 하며, 금융회사에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 ③ 채무자는 제2항의 통지 이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하며, 금융회사가 항변사유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
- ④ 채무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제11조 (비용의 부담)

-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2. 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 ② 인지세는 금융회사가 100%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 제12조 (담보의 제공)

- ① 금융회사는 약정서상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채무자나 보증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현저한 담보가치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담보의 교체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제13조 (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이행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 제14조 (채권의 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제15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 별첨 1 자동이체약관

1. 신청인 및 예금주(이하 "고객"이라 합니다.)는 약정된 납부일을 기준으로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유일인 경우 익명입금)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잔고보유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합니다.)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처리되며, 금융기관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3.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일 현재 회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 고객과 해당 계좌개설금융기관이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따르겠습니다.
5. 자동이체 일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며, 자동이체일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납부자의 사정으로 예금계좌를 변경하거나 자동납부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자동납부(해지)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8.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납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잔존가치보장서비스에 관한 추가약정서

금융감독원 심사 승인일 : 2015. 3. 27

할부금융 계약자(이하 "갑"이라고 함)는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와 할부금융약정(이하 "원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면서 잔존가치보장서비스를 추가로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약정서(이하 "추가약정서")라고 함)를 체결하기로 합니다.

### 제1조 서비스내용

- 잔존가치보장서비스(이하 "서비스")란 "갑"이 "원계약"의 약정기간 만료 전 정해진 시한까지 "원계약"의 대상이 되는 차량(이하 "대상차량"이라고 함)을 "을"이 지정하는 자(이하 "병"이라 함)에게 인도하고, 대상 차량이 본 "추가약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갑"의 선택에 의하여 본 "추가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로부터 대상 차량의 만기시 잔존가치 금액(본 조 제2항에서 정한 예상잔존가치 금액에서 본 추가약정서 제5조에서 정한 "감가금액의 합" 및 "초과운행부담금"을 차감한 값을 의미함, 이하 "만기 시 잔존가치금액"이라고 함)을 보장받고, 이를 "원계약"에서 약정한 유예금(이하 "유예금"이라고 함) 상환에 충당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본 "추가약정"에 따른 체결 당시 예상되는 예상잔존가치금액 및 연간약정운행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잔존가치금액	원
연간약정운행거리	Km / 년

### 제2조 서비스 진행절차

-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고객의 대상차량 매각의사 표시 → 대상차량 인도 → 평가결과에 대한 고객 확인 → 감가금액 및 초과운행부담금 납입(사유 발생시) → 장애사유의 보완완료 → 경매 → 소유권이전 → 유예금 정산

### 제3조 매각의사의 표시

-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갑"은 "원계약"의 "만기일" 1개월 전까지 "을"에게 대상차량에 대한 매각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갑"의 매각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갑"에게 대상차량에 대한 경매 등 매각 절차를 진행할 "병"의 상호, 주소, 연락처 및 담당자명을 이메일 또는 LMS로 안내합니다.

### 제4조 대상차량의 인도

- "갑"은 "원계약"의 만기일 18시까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병"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상차량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 "갑"은 대상차량 매각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대상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유지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까지 대상차량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자동차세, 설정/압류 해지비용, 범칙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갑"은 대상차량 매각과정에서 본인에게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5조 매각대상차량 평가 및 고객확인

- 감가금액의 산정
  - "을"은 "갑"이 제4조 제1항에 따라 "병"에게 인도한 대상차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 "을"은 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한 후 "갑"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평가결과 대상차량에 감가사유가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감가금액의 합" \* 을 안내하고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감가금액의 합"이란 별첨 1의 "차량 평가 및 감가 산정 기준"에 따른 개별 감가평가액의 합계금액을 의미합니다.
  - "갑"이 대상차량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매각의사를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갑"이 대상차량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 "갑"은 지정된 기일까지 "감가금액의 합"을 "을"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초과운행부담금
  - "갑"이 본 추가약정서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연간약정운행거리를 초과하여 대상 차량을 운행한 경우, "갑"은 본 항 제2호에 규정된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을"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초과운행부담금 기준은 인도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초과운행부담금 산정방법)

초과운행거리합	10,000Km 이하	10,001Km ~ 20,000Km	20,001Km ~ 40,000Km	40,000Km 초과
초과운행부담금 (Km 당)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예) 할부기간3년 및 연간 20,000Km 운행거리 약정 후 만기 차량 인도 시 75,000Km운행한 경우, 15,000Km(=75,000Km - 20,000Km) 3가 초과 운행거리가 되고, 초과운행부담금은 2,000,000원 (= 10,000Km × 100원 + 6,000Km × 200원)이 됨.

### 제6조 매각의사의 철회

- "갑"이 매각대상차량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추후 "병"이 진행하는 대상차량에 대한 경매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갑"은 대상차량의 매각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는 유찰되며 "서비스"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고, "갑"은 본조에 따라 "원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유예금" 및/또는 이자를 "을"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갑"이 매각대상차량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5조의 매각대상차량평가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상차량의 매각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매각의사를 철회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대상차량을 제4조 1항에 따라 "병"에게 인도한 장소에서 직접 인수하여야 합니다.
- "갑"이 추후 "병"이 진행하는 대상차량에 대한 경매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갑"은 제7조의 경매액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상차량의 매각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매각의사를 철회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대상차량을 제4조 1항에 따라 "병"에게 인도한 장소에서 직접 인수하여야 합니다.
- "갑"이 지정된 기일(매각대상차량에 대한 평가결과 또는 경매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을"에게 매각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갑"이 매각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 "갑"이 매각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갑"은 대상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아래 금액을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계약"상 만기일 이전에 매각의사를 철회하고 대상차량을 인수하면서 유예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따로 이자가 부과되는 않으며 "원계약"에서 정한 만기일까지 "원계약상"의 유예금(이하 "유예금")만 납입하면 됩니다.
  - 유예금
  - 이자금액  
 이자금액 = (유예금 X 이자율) X ("만기일"로부터 유예금 납입일까지의 경과일수) / 365)  
 \* 만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상차량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원계약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하며 그 이후에는 원계약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갑"은 대상차량이 제5조에 규정된 매각대상차량평가를 위해 제3조의 장소로 이동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제4조에 따른 차량인도시점의 운행거리와 본 조에 따른 매각의사 철회시 인수시점의 운행거리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갑"이 대상차량의 매각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갑"은 철회시점까지 발생한 매각 비용(주차비, 자동차 검사비, 탁송료, 경매관련 수수료, 경매관련 낙찰 수수료 등) 일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7조 대상차량의 매각 및 정산

- 매각대상차량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낙찰 가격이 확정 되면 "병"은 갑에게 최종 낙찰 가격을 즉시 안내하여야 합니다.
- "갑"은 대상차량의 경매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매결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각의사를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갑"이 대상차량의 경매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 "갑"은 경매결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병"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갑"이 지정된 기일(경매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병"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갑"이 매각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 대상차량이 경매되어 최종 매수자(낙찰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갑"과 "을"은 "매각대금 등의 합" \*에서 "원계약"상의 유예금을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 \*"매각대금 등의 합"이라 함은 대상차량의 매각대금(부가가치세 포함)과 제5조에 의한 "감가금액의 합" 및 "초과운행부담금"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1)"매각대금 등의 합"이 약정잔존가치금액 보다 적은 경우 "만기시 잔존가치 금액" 만큼 "원 계약"상 유예금이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 즉 차량의 매각 대금은 전액 "원 계약"상 유예금의 변제에 충당되고, 충당 후 남은 나머지 유예금도 "갑"이 제5조에 따라 "감가금액의 합" 및 "초과 운행부담금"을 "을"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
  - 2)"매각대금 등의 합"이 약정잔존가치금액 보다 큰 경우 "갑"은 "병"으로부터 "매각대금 등의 합"과 약정잔존가치금액의 차액 만큼을 지급받습니다.

### 제8조 장애사유의 보완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경매 시작전까지 지체없이 그 장애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본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원계약"에 따른 할부금, 이자, 연체 이자 등 "원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대상 차량에 미납된 공과금(제세포함), 과태료 등이 있는 경우
- 법원 가압류, 압류, 등 차량 매매에 제약 사항이 있는 경우
- "갑"이 제5조에 따른 "감가금액의 합" 및 "초과운행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등 본 "추가약정서"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9조 서비스의 가절

차량 매각 신청시 대상차량은 즉시 운행가능 상태이어야 하며 차량에 추가적인 장비를 장착한 경우,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시한(만기일 18시)까지 원상상태 회복한 후 인도하여야 합니다. 아래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유예금을 직접상환하거나 만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원계약"의 "만기일" 1개월 전 이후에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또는 "원계약"의 만기일 18시를 경과하여 대상차량을 "병"에게 인도하는 경우
-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시한(만기일 18시)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경우 대상차량을 인도하는 경우
- 인도일 현재 중도해지, 기한이상의 상실 등의 사유로 인해 "원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 대상차량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승계 포함)
- 자동차의 파손, 임의개조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자동차의 하자 및 수리사실, 주행거리 등을 고의로 은폐 · 조작한 경우
- 자동차의 침수, 전복, 화재, 절단 등 자동차상태가 수리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심각하게 잔존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 대상차량의 소유권 이전에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사유 : 저당권설정, 가압류, 가처분, 채납처분 등)

### 제10조 양도 및 이전의 금지

"갑"은 본 "추가약정"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제11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추가약정"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 규율됩니다. 본 "추가약정"과 관련하여 "갑"과 "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년 월 일

본인은 "잔존가치보장서비스에 관한 추가약정서"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고 이해한 후 서비스 가입을 신청합니다.

"갑" : \_\_\_\_\_ (인)

"을" :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별첨 1) 차량 평가 및 감가 산정 기준

기준	감가율	기준	감가율
후드	3%	C필러패널(좌) / C필러패널(우)	2%
프론트 웬드(좌) / 프론트 웬드(우)	2%	프론트 패널	3%
리디에이터 서포트	2%	사이드 멤버	5%
앞문(좌) / 앞문(우) / 뒷문(좌) / 뒷문(우)	3%	인사이드 패널(좌) / 인사이드 패널(우)	2%
트렁크 리드	5%	달합하우징(좌) / 달합하우징(우) / 뒷합하우징(좌) / 뒷합하우징(우)	5%
루프 패널	6%	크로스 멤버	3%
쿼터 패널(좌) / 쿼터 패널(우)	3%	대쉬 패널	3%
사이드실 패널(좌) / 사이드실 패널(우)	1%	플로워 패널	3%
A필러패널(좌) / A필러패널(우)	2%	리어 패널	3%
B필러패널(좌) / B필러패널(우)	2%	트렁크 플로워 패널	2%
도장	1%		

반납시 교체 수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하고 원상 회복 및 감가 한다.

\*반납 이전 이용자 자비로 교체, 수리 시 감가를 면 인정한다. / \*차량의 가치 감가 금액은 (총고 시점의 신차 가격(감가율)로 한다.

\*위 별첨 1 표의 차량 감가 기준 항목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자동차 성능, 상태 검사 결과 기준으로 사고에 의한 차체 절단 및 굴곡, 교차, 차량 부위 탈 부착의 수리 등을 포함한다.